



정책 및 절차 매뉴얼

2019 년판

2019 년 6 월 12 일 연례 회의에서 찬성으로 승인됨

자원봉사자와 스태프 구성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 계층 성인들에 대한 돌봄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정책은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 계층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데 있어 안전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핸드북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스태프 구성원들을 위한 절차와 지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본 정책은 어린이, 청소년, 취약 계층 성인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여 그들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부텍사스연합회(CTC)는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여 이를 엄격히 집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정책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동의서 양식(agreement form)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호대상자 사역을 위한 방침 및 절차

목차:

- 용어 정의.....4
- 안전 시스템 개요.....6
- 안전 정책.....8
-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건 신고9
- 안전위원회12
- 감시감독 계획14
- 안전한 환경 만들기14
- 어린이/학생 대비 사역자 비율15
- 징계17
- 화장실 사용 지도 및 도움 관련 지침18
- 주류 및 마약류 등.....20
- 의료용 약물20
- 신체 노출.....20
- 보호대상자와의 개별 관계20
- SNS(소셜미디어).....20
- 교통22
- 부모 연락정보23
- 부모 참여.....23
- 신체적 접촉23
- 성(性) 관련 대화.....24
- 적합한 자료 활용.....24
- 숙박 관련 지침24
- 흡연 및 전자담배.....25
- 언어적 소통25
- 아동의 귀가.....26
- 주요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목록27

용어 정의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며 그 혜택을 제공 받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어린이(Child)란 출생일 기준으로 5 학년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청소년(Student/Youth)란, 6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취약 계층 성인(Vulnerable Adult)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정서적 장애 또는 기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장애가 있어 학대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성인을 의미합니다. 취약 계층 성인에 대한 별도 MinistrySafe 정책은 없지만, 이들에 대한 모범적 보호 및 관리 사역 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본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자(Director)란 특수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자(Worker)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교역자, 직원,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director) 및 자원봉사자 등을 의미합니다. 사역자는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 관리자(SSA)란 우리 교회의 MinistrySafe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학대(Abuse)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 및 발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나 행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학대에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가해, 성적 학대, 성적 착취, 신체적 유기, 의료적 방치 또는 부적절한 감독 등이 있으며, 성인이 보호대상자에게 가하는 학대 뿐 아니라 성인 간 또는 보호대상자 간의 학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Act of Abuse)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 누군가가 보호대상자를 위협하거나 보호대상자에게 정서적 또는 신체적 가해를 할 때, 또는 그리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 누군가가 보호대상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방조 및 방관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성적 접촉을 하거나, 그리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이는

성적인 행위 요청, 성적 동기가 있는 신체 접촉, 보호대상자와의 성적인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및 기타 성적 접근 행위 및 그리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호대상자가 타인에 대해 원치 않는 정서적, 성적, 또는 신체적 접근을 하였을 때. 이는 성적인 행위 요청, 성적 동기가 있는 신체 접촉, 보호대상자와의 성적인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기타 성적 접근 행위 및 그리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안전 시스템의 개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돌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모든 사역자는 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모든 **안전 단계**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호대상자들과 직접 접촉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임명된 모든 목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1 단계: 성적 학대 인식 교육

우리 교회 정책 및 절차는 사역자가 어떤 유형이든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을 발견하였을 시 사역자는 감독자 또는 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성적 학대자의 특성과 성적 학대를 위해 사람을 "그루밍"하는 그들의 행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루밍은 학대자가 잠재적인 피해자를 선택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신뢰(및 잠재적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잠재적 피해자를 성적 활동으로 조종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그러한 학대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역자들이 학대자의 성격과 그루밍 행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은 의무적으로 MinistrySafe 성적 학대 인식 교육(현장교육 또는 www.MinistrySafe.com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2 단계: 선별과정

사역자들은 교회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역자는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채용지원서 작성(직원만 해당)
- 안전신청서 작성(직원 및 자원봉사자)
- 대면 인터뷰 완료(직원 및 자원봉사자)
- 확인할 추천자(references) 제공(직원 및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어린이, 학생, 취약 계층 성인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에서 봉사할 자격을 얻기 위해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3 단계: 정책 및 절차

사역자는 이 매뉴얼에 수록된 정책을 검토하고 자신이 그 자료를 읽고 이해했으며 정책의 요건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4 단계: 신원조회

우리 교회는, 보호대상자가 관여되는 사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신원조회(범죄경력확인)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에 따라, 신원조회 수준이나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원조회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안전 정책

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

우리 교회는 사역 프로그램과 사역 활동에서 **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역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보호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합니다.

사역자가 부적절한 행동(예: 정책 위반, 감독 태만, 비모범적 행위)을 하거나 학대(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사역자는 본 정책에 따라 즉시 목격 내용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스럽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고

우리 교회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학대 혐의에 대한 보고는 심각하게 간주되어 본 정책 및 주(州)법에 따라 교회 안전위원회 의장과 경찰서, 아동보호서비스 또는 기타 해당 기관에 신고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감독자 또는 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성적 학대자는 학대 목적으로 아동을 세뇌하는 '그루밍(grooming)' 행위를 하며, 사역자는 이를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역자는 감독자 또는 안전위원회 위원에게 '그루밍' 행동, 정책 위반 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책의 집행

다른 사역자들을 감독하는 사역자에게는 모든 교회 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본 교회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는 즉각적인 해고, 징계조치 또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의 배제 조치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목사와 교회임원회(Church Council)*의 책임입니다.

(* 27 페이지 교회의 주요 스태프/자원봉사자 목록 참조)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건 신고

정책 위반 신고

각 사역자는 보호대상자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 관찰 내용, 행위, 행위의 부재 또는 본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부적절, 수상하거나 그루밍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관련된 모든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후사역 분야의 직속 감독자,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27 페이지 참조)

정책 위반자에 대한 조치

금지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회가 보호대상자에게 해롭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 참여가 즉시 정지됩니다. 해당 조치는 법집행기관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교회 사역 및 보호대상자가 참여하는 모든 활동 및 프로그램에 사역자로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이 스태프(staff) 또는 직원인 경우, 금지행위를 근거로 교회로부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를 지정된 사람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또한 본 정책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스태프 또는 직원의 해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는 우리 교회에서 보호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대 의혹 사안에 대한 법집행기관 신고

텍사스 주(州)법(텍사스 가족법(Texas Family Code) 261 장)에 따라, 모든 성인은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혹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사안이 실제로 신고되기 전까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아동 학대 또는 유기 의혹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이를 직속 상급자,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독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법집행기관에 신고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어떤 조항도 사역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치 혐의를 관련 법집행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안 발견한 사역자가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관련 기관에 신고되도록 하는 것은 원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본 교회의 사역자는 동료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정책 위반 내용을 그 지역 직속 상급자,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지도부에 전달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소지 전문인

사역자가 '전문인'인 경우 기타 추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州)법에 따라,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되었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유를 발견한 전문인은 자신이 이러한 의심 사유를 발견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하도록 위임하거나 부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텍사스 주(州)법에 따라, '전문인'이란 주정부로부터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았으며 면허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전문인으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교사 또는 보육원 직원
-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소 또는 의료시설의 간호사, 의사, 또는 직원
- 청소년 보호관찰관 또는 청소년 구금 또는 교정 담당관

아동으로서 과거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사역자는 또한 어떤 성인이 아동이었을 당시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였다고 여길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다른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자는 다음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보호대상자의 이름 및 주소
- 보호대상자에 대한 돌봄, 양육 또는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 학대 또는 유기에 관한 다른 관련 정보.

사역자가 ‘전문인’인 경우, 그 사역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전문인’은 신고를 위임할 수 없음).

상급자의 대응

사역자는 전문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 발생 후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감독 역할을 하는 스태프에게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사역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나면, 보호대상자와 이야기한 사람이나 자원봉사자와 만나서, 대화 전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는 관련 법집행기관 또는 아동보호서비스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부는 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교회를 대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부: 1-800-252-5400

- www.dfps.state.tx.us/Contact_Us/report_abuse.asp

행정 심의

안전위원회는 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교회를 대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범죄 수사는 법집행기관이 하게 됩니다. 안전위원회 또는 목사가 행정적 심의를 발의합니다.

- 혐의에 평신도가 개입된 경우, 감독, 감독 보좌관, 지방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에게 고소장을 전달합니다.
- 혐의에 목사가 개입된 경우, 감독, 감독 보좌관, 지방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에게 고소장을 전달합니다.(¶2704.2)
- 혐의에 감독이 개입된 경우, 지역총회 감독회(College of Bishops)(관할단체)의 의장과 사무장에게 고소장을 전달합니다.(¶2704.1)

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

우리 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안전위원회를 임명 및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션 선언

안전위원회의 목적은 교회가 사역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

안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1. 안전시스템관리자(SSA) (아래 직책을 겸할 수 있음)
2.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지정하는 다른 교역자 스태프
3. 아동부 목사/부장(스태프 또는 자원봉사자)
4. 학생 사역 목사/부장(스태프 또는 자원봉사자)
5. SPRC 구성원
6. 수탁이사회 구성원
7. 교회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위원들

(*이들 직책이나 직함은 교회 내의 구조나 보고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

회의는 안전시스템관리자(SSA)나 다른 위원회 피지명인이 주재합니다. 안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며, 리스크관리 관행과 변경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안전위원회는 위원의 제안이 있거나 사고 또는 혐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모입니다.

책무

안전위원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대상자의 안전 및 리스크 관리 문제에 관련된 기존의 정책과 절차를 적용.

2. 보호대상자가 참여하는 모든 사역 활동의 안전 정책 관련 자율적 준수 여부 감시 및 감독.
3.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교회 교회임원회(Church Council)에 권고.

감시감독 계획

사역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해 감시감독관이 후원 행사에 정기적으로(예고 후 또는 예고 없이) 방문하여 사역자들이 보호대상자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감독자는 적절할 경우 구두와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모범 관행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 **각 감독자**는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매주 최소한 한번 예정에 없는 시찰을 수행합니다.
-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는 유급 스태프 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마다 서면으로 수행 평가를 수행합니다.
-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는 주기적으로 구술 활동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는 리스크 관리 교육 참여와 리스크관리 절차 준수를 다루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목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한번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 예정에 없는 시찰을 수행합니다.
- **목사**는 한달에 한번 교역 책임자와 만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합니다.
- **SPRC/PPRC** 는 일년에 한번 교역 책임자와 만나, 안전교육 및 절차 등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 논의합니다.
- **교역 책임자**는 주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달 최소한 한번 예정에 없는 시찰을 수행합니다.

안전한 환경 만들기

교역 책임자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역 장소로 지정된 구역이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감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역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비육안 감시를 포함합니다. 사역자들은 각 프로그램 행사 종료 후 장소를 떠나기 전 모든 방과 화장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이

어린이 사역 프로그램이나 수업 중 돌봄 없이 방치되는 어린이가 없어야 하며,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수업 15분 전후에 더해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러 오거나 어린이가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어린이 사역을 맡은 사람은 어느 방이나 빌딩에서도 개별 어린이와 단 둘이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른들이 다녀난 후 자신과 어린이가 단 둘이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역자는 어린이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이나 빌딩 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 부모가 데리러 올 것을 기다리는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았을 경우, 어린이를 데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 주변 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구역에 함께 있는 두 명의 어린이가 있다면, 이들을 (좀 더 개방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순회하면서, 어떤 각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구역에 각별히 주목하는 아이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 미끄럼틀 안쪽, 구석진 곳, 구조물 뒤편)

학생

학생 사역 프로그램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돌보지 않거나 감독이 없는 채 남겨지는 학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어떤 방이나 건물에서도 개별 학생과 단 둘이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학생이 단 둘이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역자는 학생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이나 빌딩 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 정규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어느 학생이 사역자와 더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받고 싶어할 경우,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 이웃의 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구역에 함께 있는 두 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들을 (좀 더 개방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어린이/학생 대비 사역자 비율

우리 교회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중부텍사스연합회(CTC)에서는 최소한 서로 친척관계가 아닌 두 명의 어른 사역자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u>프로그램</u>	<u>친척관계가 아닌 사역자</u>	<u>어린이</u>
영아반	2	8
유아반, 2~3 세	2	12
유아반, 4~5 세	2	18
초등반	2	20

중부텍사스연합회(CTC)는 상기 사역자 이외 추가 보조 인원을 가장 나이가 많은 어린이 참가자보다 최소한 5 살 이상이 많은 사람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역자 대 어린이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역자는 즉시 교역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감독자들은 즉시 대체 사역자들을 찾아서 본 정책에 따른 사역자 대 어린이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추가 사역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

중부텍사스연합회(CTC)는 주 청소년 이벤트 리더를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보다 최소한 5 살이 많은 사람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주요 보조 인원은 고등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을 수료한 후 1 년 이상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 참가자보다 3 살 이상 많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학생 사역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최대 30 명에 이르는 학생 그룹의 경우, 서로 친척관계가 없는 사역자 최소 2 인이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학생 그룹 규모가 30 명을 초과할 경우, 서로 친척관계가 없는 사역자 최소 3 인이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15 명의 학생마다, 1 인의 추가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 대 학생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역자는 즉시 담당 교역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벤트 리더는 본 정책에 따른 사역자 대 어린이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추가 사역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위 비율은 MinistrySafe 의 최소 권장사항입니다. 감독 상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사역자가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징계

우리 교회 정책 상 사역자는 보호대상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체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엉덩이 때리기, 손바닥으로 치기, 꼬집기, 때리기, 기타 보호대상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복이나 교정으로서 물리적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제할 수 없거나 이례적인 행태는 즉시, 부모/보호자 및 교역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각 보호대상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중부텍사스연합회(CTC)는 다음의 **모범관행**을 권장합니다.

- 어린이에 대한 행동관리로서, 타임아웃(어린이가 하던 활동을 멈추고 진정하도록 하는 것) 및 다른 비(非)체벌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를 해야 합니다.
- 물리적 개입을 하기 전에 어린이에게 말로써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나이가 더 어린 어린이의 경우, 약간의 물리적 주의 환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아이의 손에 든 장난감을 뺏는 경우).
- 문제 행동을 그치지 않을 경우, 어린이를 그룹에서 이탈시켜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방의 구석에 있도록 합니다(아이만 홀로 두지 말 것).
- 아이가 이러한 타임아웃을 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하고, 사역자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 "제이미,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크리스를 계속 때렸지? 그래서 3분 동안 저 파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해"). 또한 아이를 그룹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아이의 화를 돌출 수 있으므로, 말로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타임아웃 중인 아이를 안거나 잡지 말아야 합니다.
- 타임아웃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앉아 있을 의자를 주거나 앉아 있을 "장소"(베개, 담요, 방석 등을 이용하여)를 만들어 줍니다.
- 타임아웃 시간이 어린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1살 당 1분(3세 어린이의 경우 3분)보다 길어지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타임아웃 시간 동안 아이를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타임아웃 시간이 길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어린이에게 칭찬을 하여 안심시키면서 이를 지속합니다 (예: "제이미, 조용히 앉아서 아주 잘 하고 있어. 2분만 더 참자.").
- 타임아웃 시간을 완료했으면 아이를 칭찬해주고, 보상으로 그룹에 다시 쫓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했던 행동을 되풀이하면 다시 타임아웃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칭찬과 함께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중부텍사스연합회(CTC)는 다음의 **모범관행**을 권장합니다.

- 청소년이 막무가내로 행동하거나 사역자가 말로 하는 경고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그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싸움이나 물리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사역자는 연루된 학생들을 말로써 그만두도록 지시하되, 물리적 개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통제할 수 없거나 이례적인 행태는 즉시, 부모/보호자 및 교역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 지도 및 도움

영아반 아동

영아는 화장실 사용 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역자는 다음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기저귀 갈기

- 기저귀 갈기는 다른 영아반 사역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 아이를 기저귀 가는 테이블 위에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 영아반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한 특별한 지침은 기록하여야 합니다 ("예: 세스 아담스는 가방에 발진용 약이 있습니다.").
- 더럽혀진 기저귀를 벗기고 나서는 즉시 기저귀와 옷을 다시 입혀야 합니다.

- 기저귀는 기저귀 가는 곳이나 기저귀 매트 위에서만 갈아야 합니다.

용변 교육

- 용변 교육을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경우, 문을 일부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 나이가 어린 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 부모가 아이를 자원봉사자나 스태프에게 맡기기 전에, 각 아이의 용변 교육 진행상태에 대해 부모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영아반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한 특별한 지침은 기록하여야 합니다 (예: "조지아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갈 것인지 물어봐주어야. 조지아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물어봐 주세요.").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모든 사역자가 손을 씻고, 필요한 모든 표면을 소독해야 합니다. MinistrySafe 는, 어느 성별의 아이이든, 여성만이, 또는 아이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만이 기저귀를 갈고, 용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반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는 필요 시 감독 및 지원 목적으로 화장실에 동반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개별 능력에 따라 최소로 필요한 도움만을 주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감시가 없는 상태로 아이와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가 개별 아이를 점검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야 할 경우 동반할 다른 사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역자가 동반해서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사역자는 화장실 바깥 문을 두드리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사역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 화장실 바깥 문을 열어두어야 하며, 어린이가 화장실 칸 문이 닫힌 상태로 용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로써 도우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의 옷을 정리하거나 여밀 때는 다른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

부모는 특별한 장애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사역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4 살 이상 장애 아동의 기저귀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갈아야 합니다.

주류 및 마약류 등

사역자는 교회 시설에서 활동, 보호대상자와 함께 이동, 보호대상자와 함께 일하거나 감독하는 동안, 주류 및 불법 마약류 등의 약물을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태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료용 약물

지정 사역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처방약을 보호대상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용 약물은 구매 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건강정보 양식에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기저귀 연고 및 벌레물린 데 바르는 연고 등은 예외입니다.

신체 노출

사역자는 자신이 돌보는 보호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알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몸이어야 하거나 알몸이 될 수 있는 상황(수영장 파티 또는 숙박 수련회 등)이 있을 경우, 책임 사역자는 모든 참여자들을 위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개별적이고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와의 개별 관계

사역자는 **어린이**와 1대 1로 관찰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 미팅이나 교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청 및 선별 과정을 마친 다른 사역자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학생의 정서적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역자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사역해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인정됩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교류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학생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SNS(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통신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냅챗, 플리커(Flickr), 블로그, 데이트 웹사이트 및 앱, 화상 전화 서비스(예: FaceTime, Skype), 그리고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 가상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또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사역 시 보호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청소년, 어린이들이 SNS 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부모/보호자는 항상 자신의 자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사역자는 가능한 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부모/보호자가 교회에 제출한 구체적 허락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종류든 SNS 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의 어느 곳에서나 보호대상자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가끔 교회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파트너 단체의 어린이 사진을 공유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은 파트너 단체의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우리 교회의 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부모/보호자가 교회에 제출한 구체적 허락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상의 어느 곳에서나 보호대상자의 개인 정보 또는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예를 들어, 보호대상자의 사진에 이름을 게시하거나 부모를 “태그”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페이스북과 같은 SNS 를 사용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친구”를 신청하는 행위. 성인은 부모/보호자가 알고 있고 허락한 경우에 보호대상자로부터의 “친구” 신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 4) 보호대상자가 학대, 유기, 착취 당했거나 그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텍사스 주(州) 법과 본 정책을 준수하여 목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또는 기타 SNS 를 사용하여 보호대상자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적절한 의사소통에는 성적 동기가 있는 대화, 섹스팅(sexting), 부적절한 사진 공유, 조종, 괴롭힘, 협박, 또는 그루밍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보호대상자 간에 오래 계속되는 대화도 부적절하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면대면 대화가 추가 감독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SNS 를 통한 대화는 항상 복구될 수 있는 수단(예: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가 자녀와 성인 간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을 항상 강력히 권장합니다.

교통

사역자는 수시로 보호대상자를 위해 교통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보호대상자의 교통편에 관여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1. 보호대상자를 목적지로 직접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정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모든 차에 2인의 사역자가 탑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른이 있는 차량 안에 한 사람의 보호대상자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2. 사역자는 차량에 있는 동안 보호대상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3. 긴급 상황이 아닌 한, 교회 밴이나 교회 소유 또는 렌트 차량 운전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운전사는 각 해당 교회가 가입한 보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모 연락정보

보호대상자가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프게 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심한 징계의 문제에 봉착한 경우, 보호대상자를 사역자에게 맡긴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각 보호대상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참여

부모나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대상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와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 중인 부모님은 MinistrySafe 준수요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

우리 교회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 후원 행사 진행 시 긍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신체적 접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는 누구나 다음과 같은 관행을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1. 사역자와 보호대상자 간의 어깨동무, 등 두드리기, 기타 적절한 신체적 애정 표현방식은 건강한 발달에 중요하며, 교회 환경에 적합합니다.
2. 부적절한 접촉 및 부적절한 애정 표현은 금지됩니다.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애정을 담은 접촉 또는 표시는 즉시 교역 책임자나 목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체적 접촉은 보호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역자의 정서적 욕구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4. 신체적 접촉 및 애정은 관찰 가능한 장소에서 또는 다른 보호대상자나 사역자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5. 신체적 접촉의 형태를 불문하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로 보일 여지조차 없어야 합니다. 사역에서 보호대상자와 함께 있는 사역자의 개인적 행동은 항상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 행위에는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6. 내키지 않아 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신체적 접촉, 만짐 또는 애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보호대상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7. 사역자는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보호대상자를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의 손길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사역자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의심되는 학대는 즉시 직속 감독자, 교역 책임자, 또는 목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성(性) 관련 대화

사역자는 보호대상자와 성(性) 관련 대화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와의 개인적 관계, 데이트, 성적 행위에 관하여 부적절하거나 명시적인 내용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수시로, 순결, 데이트, 성관계, 사람의 성 등과 관련하여 연령대에 적절한 주제를 토론이나 수업으로 다룰 수 있는 후원 행사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수업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교회의 관점을 전달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미리 이러한 수업에 대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자료 활용

사역자는 교회 내 또는 보호대상자가 있는 곳에서(수업을 위한 자료로서 지정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성적 경향이 있는 자료(잡지, 카드, 사진, 동영상, 필름 등)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리더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매체 및 영화, TV 쇼, 이미지 등을 활용한 행사에 대해 부모의 확인을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R 등급 영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잠자리 준비

사역 활동에 따라서는, 때때로, 보호대상자와 사역자를 위해 숙박을 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필요할 경우, 사역자는 다음의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1. 친척관계가 아닌 사역자 2 명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인 사역자 2 명은 행사 참여 전 교회 신청 및 선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숙박 행사 준비안을 활동 전 목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부모/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행사 허가서에 포함되어 부모/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호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한, 사역자 한 명이 깡 상태에서 보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적절하고 몸을 가리는 수면복장을 해야 합니다.
5. 남녀 어린이가 모두 포함된 숙박 행사(Sleepover)의 경우, 참가자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다른 방에서 자야 하며, 같은 성별의 사역자가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6. 사역자들은 잠을 자는 보호대상자가 지정된 수면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침 장소를 육안검사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취침 점검을 하는 동안 보호대상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8. 잠자리가 일반적인 침대가 아닐 경우, 각 사역자와 보호대상자는 1 인용 침낭이나 담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1 인 1 침낭/담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흡연 및 전자담배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보호대상자나 그 부모가 있는 곳에서, 또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담배나 전자담배의 사용이나 소지를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 내에는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

사역자와 보호대상자 사이에서 주고 받는 언어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목표가 보호대상자의 영적 성장과 개발 측면에서 부모를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호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격려가 되고 건설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역자는 이를 위해, 듣기 거부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겁을 주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거나, 굴욕감을 주는 방법이거나, 합리적인 관찰자가 보았을 때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호대상자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역자는 보호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동의 귀가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어린이를 담당하는 모든 기간 동안 어린이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맡은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역자는 서비스 또는 활동 종료 시, 자신이 맡은 어린이가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도록 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맡기러 왔던 사람이 해당 어린이를 데려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사역자가 어린이를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를 돌려주기 전에 즉시 직속 감독자나 교역 책임자를 찾아서 알려야 합니다.

MinistrySafe 주요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주요 분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스태프이든 자원봉사자이든)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연간 기준으로, 또는 변경이 있을 때 수정되며, 활동 중인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공식 정책 문서와 함께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MinistrySafe 선임 목사			
어린이부 목사/부장			
학생부 목사/부장			
MinistrySafe 수탁인 대표			
MinistrySafe SPRC 대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다른 감독자:

유치부 부장			
어린이부 성가대 부장			
학생부 성가대 간사			

정책 및 절차

인정 및 동의 확인서

본인은 정책과 절차 사본을 받아 읽었으며 매뉴얼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저는 본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일하는 동안 이러한 지침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본 매뉴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교회가 지침을 개정,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변경사항은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본인의 사역 직무설명에 기재된 의무를 검토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본인의 고용관계나 자원봉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가능할 시 본인의 감독자에게 2 주 전에 알릴 것입니다.)

본인은 본 핸드북에 수록된 자료와 지침이 어떤 점에서도 저와 본 교회 간의 계약적 고용관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경우, 업무 시간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제정되어 배포될 수 있는 새로운 지침과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매뉴얼 지침을 검토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정책과 절차 매뉴얼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사역자 성명 (정자체로 기재)

사역자 서명

일자: _____

[이 페이지는 정책과 절차서에 첨부됩니다.]

정책 및 절차

인정 및 동의 확인서

본인은 정책과 절차 사본을 받아 읽었으며 매뉴얼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저는 본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일하는 동안 이러한 지침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본 매뉴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교회가 지침을 개정,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변경사항은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본인의 사역 직무설명에 기재된 의무를 검토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본인의 고용관계나 자원봉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가능할 시 본인의 감독자에게 2 주 전에 알릴 것입니다.)

본인은 본 핸드북에 수록된 자료와 지침이 어떤 점에서도 저와 본 교회 간의 계약적 고용관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경우, 업무 시간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제정되어 배포될 수 있는 새로운 지침과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매뉴얼 지침을 검토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임을 이해합니다.

정책과 절차 매뉴얼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사역자 성명 (정자체로 기재)

사역자 서명

일자: _____

[이 페이지에 서명하여 절취한 후 안전시스템관리자(SSA)에게 제출하십시오.]